

[] 등록 전용용기 제조업 [] 변경등록 신청서 [] 변경신고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	처리기간 14일
------	-----	--	----------

신청 · 신고인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
	주소	(전화번호 :)

제조시설 소재지	(전화번호 :)
----------	-----------

전용용기 규격 및 제조시설	제조하려는 전용용기 규격		전용용기 제조시설		
	종류	원료·재질	시설명	수량 (식)	최소 및 최대 생산 규격(ℓ)
	봉투형용기				~
	골판지류 상자형 용기				~
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				~	

변경 사항	변경 전	변경 후
-------	------	------

변경 사유	
-------	--

[] 제34조의3제1항
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의2제1항·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[] 제34조의4제2항 에 따라
[] 제34조의4제4항

[] 등록
전용용기 제조업 [] 변경등록 을(를) 신청합니다.
[] 변경신고

년 월 일

신청인(신고인)

(서명 또는 인)

() 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신청인(신고인) 제출서류	1.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(인쇄설비를 임차하거나 인쇄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포함합니다) 2. 제조하려는 전용용기의 종류별 구조도와 원료 및 재질 설명서 3.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	수수료 등록 : 25,000원 변경 : 15,000원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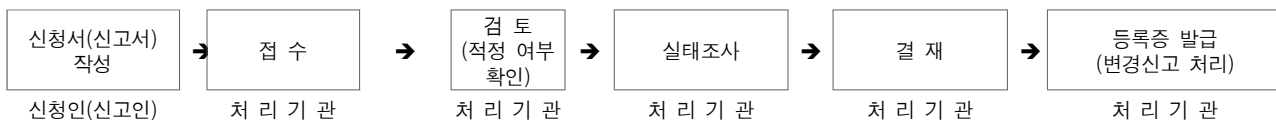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작성방법

기재할 내용이 많은 경우 세부내용을 붙임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.
